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. 4. 29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### 1. 개정이유

서대문체육회관 등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사용료 감면 대상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변경, 신설함. (안 별표 1~5)
- 나. 사용료 감면 등에 개정된 상위법을 준용한 관련근거 마련 및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를 위한 감면 외 할증 규정을 명문화 함. (안 제10조)
- 다. 사용료 반환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함. (안 제11조)
- 라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문장 정비 (안 제8조, 안 제10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(참조 : 문화체육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(우:120-703)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2)330-1954 / 팩스 02)330-1430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  
【<http://www.sdm.go.kr/>】